



제429회 국회(임시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

인권정책기본법안 검 토 보 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법적근거 마련 및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 김영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34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혜 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3
1. 제정안의 입법배경 및 입법취지	3
2. 제정안의 구성 및 추진체계	6
3. 주요 조문별 검토	1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김영배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2025. 3. 28.

다. 회 부 일: 2025. 3. 31.

II.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참여정부를 기점으로 5년 단위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권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을 지향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법률에 명시적 근거 없이 수립·시행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더불어 대한민국의 인권보호 체계가 국제인권조약과 유엔인권이사회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인권 신장을 위한 행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하는 등 국제인권규범을 반영한 인권정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나. 인권정책 추진실적 및 추진성과를 점검·평가하고 관련 백서를 발간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다.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2조).
- 라.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3조).
-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은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4조).
- 바. 국제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를 이행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사. 기업의 인권준중책임과 기업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명시함(안 제18조 및 제19조).
- 아. 국가기관 등의 인권교육 실시의무를 명시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및 제21조).
- 자.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지정함(안 제24조).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입법배경 및 입법취지

가. 제정안의 입법배경

-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은 개별 국가들이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음. 또한, 2001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국가인권행동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
- 이러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정부에 국가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 2006년 7월 28일 제정하여 같은 날 시행된 대통령훈령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¹⁾에 따라, 2007년 11월 법무부는 인권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5년 단위 범국가적 종합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년~2011년)을 수립·시행하였고, 이후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년~2016년),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년~2022년),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순차적으로

1)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제7조(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제4조 내지 제6조에 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국제 인권기준의 변화 또는 국내 상황에 따른 이행의 가능성 변동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수립·시행하였음.

□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에 근거하여 수립·시행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법률에 근거를 두고자, 법무부는 인권정책기본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의견조회, 시민단체 간담회,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 협의회 간담회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입법추진을 합의하여 입법예고하였음(2021. 6.). 또한,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온라인 공청회(2021. 8.)를 개최하고, 법무부 및 김영배 의원 공동주관으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한 대토론회(2021. 12.)를 진행하였음.

□ 이후,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정책 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2021. 12.), 김영배 의원 등 12인의 의원들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장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의 「인권정책기본법안」을 발의하였으나(2022. 1.), 제21대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 제22대국회 임기 개시 후 김영배 의원 등 11인의 의원들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등의 내용의 「인권정책기본법안」을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025. 3.).

나. 제정안의 입법취지

□ 인권에 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국가 전체의 인권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대통령훈령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에 근거하며, 그 구체적인 수립시기, 내용 및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한 측면이 있음.

○ 또한, 현재 해당 규정에서는, 정부의 주요 인권정책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의·조정을 통하여 정부부처간의 인권업무에 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두고 있으나, 인권정책은 성격상 여러 부처와 연관된 과제가 다수이므로 각 부처가 동등한 위상을 가지고 있어 법무부장관이 타 부처와 협의 및 조정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제정안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가인권정책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 한편, 제정안에 대해서는 차별금지 교육 및 제도화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의 비율 급증 및 학습권·교육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등의 사유로 반대하는 취지의 청원²⁾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2) 청원번호 제2200184호, 2025.6.5. 회부

2. 제정안의 구성 및 추진체계

가. 구성

□ 제정안은 본칙(7개 장)과 부칙(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칙은 총 2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장 “총칙”은 목적,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주요 개념, 인권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함.
- 제2장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은 종합적·체계적 국가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인권정책계획 수립·시행, 법무부장관의 인권상황 백서 발간 및 공개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제3장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인권정책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 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제4장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은 국제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인권규범 등의 이행

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

- 제5장 “기업과 인권”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기업의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규정하여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강조하는 국제인권규범의 흐름을 반영함.
- 제6장 “인권교육”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의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평생교육기관에 인권교육을 권장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평생교육기관 등의 인권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권존중 문화의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제7장 “보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과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 보조를 규정하고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지정하는 등 실체규정에 관련되는 부수적인 사항들을 규정함.

나. 제정안의 추진체계

□ 제정안은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정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법무부(장관)**은 ① 국가인권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공청회 및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안 제5조제4항 및 제6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시행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전년도 연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공개함(안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3항). ③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해에 기본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권정책 추진성과를 종합하여 평가함(안 제9조제1항 및 제4항).
- **국가인권위원회**는 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 앞서 권고안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고, 법무부장관이 작성한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5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 ② 법무부장관이 인권정책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 의견을 표명함(안 제9조제2항). ③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국가인권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안 제12

조제5항 및 제6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청에 따라 의견 제시 및 협력할 수 있음(안 제15조). 그 밖에 국가보고서의 작성, 기업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나 인권교육을 위한 지원 등에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가 함께 규정되어 있음³⁾.

□ 한편, 2001년 5월 24일 제정되어 같은 해 11월 25일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⁴⁾ 2001년 11월 25일 출범한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⁵⁾,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고⁶⁾,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

3) 그 밖에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제16조/제17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보고서에 관하여 표명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
제19조/제20조(기업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등)	
② 정부는 기업이 제18조에 따른 인권준중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침·표준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장려하여야 함. (이하 생략)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침·표준 마련, 우수 사례 발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음.
제21조/제22조(인권교육을 위한 지원)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의무기관의 장이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 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및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3개 행정기관 간 효율적인 역할분담 및 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③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제1장 총칙

(1)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안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인권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함.
- 안 제2조는 주요 용어인 “인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인권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청을 말한다.

□ 안 제2조제1호는 “인권”을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7)에 따른 “인권” 정의와 같음.

□ 안 제2조제2호는 “중앙행정기관”을 “「정부조직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정의하고, 안 제2조제3호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8)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청”으로 정의함.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제2호는 기초지방자치체인 “시, 군, 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 관련하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교육청’과 「지방교육자치법」 제34조9)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교육지원청’이 있음. 제

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8)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9) 「교육지방자치법」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정안에서의 “지방자치단체”는 이 중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만을 포함하고, 교육지원청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유사 입법례로는 「성별영향평가법」¹⁰⁾ 등이 있음.

□ 다만, 안 제2조제2호는 「정부조직법」 제2조¹¹⁾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에 법률로 정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을 “「정부조직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정의한 것으로 보이나,

동법 제2조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하여,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9개 개별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안 제2조제2호 “중앙행정기관”의 정의를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으로 정한다.

④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11)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우주항공청

8. 「신행정부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3조 및 제4조)

- 안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안 제4조는 인권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권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안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고, 안 제4조는 인권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 이 법이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명시하려는 취지임.
- 다만, 안 제4조는 다른 법률과의 적용상 선후관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해당 법률이 유일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

는 경우가 아니면 오히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¹²⁾를 참조하여 법률 간 적용상 선후관계를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12) 「건강검진기본법」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가건강검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②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제2장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안 제5조)

- 안 제5조는 정부로 하여금 5년 단위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규정함.

제 정 안

- 제5조(국가인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5년마다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와 그 추진 방안
 3.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4.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제16조에 따른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권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앞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고안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송부된 권고안을 존중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공청회와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 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심의 전에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⑥ 법무부장관은 인권 상황의 반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요청을 받아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기본계획안의 확정 절차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제1항),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인권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와 그 추진 방안,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에 관한 사항,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제2항).

○ 또한, 안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작성·송부-법무부장관의 기본계획안 작성-공청회-(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심의-법무부장관의 기본계획 확정’으로 정하고 있고,

○ 안 제5조제6항 및 제7항은 법무부장관이 인권상황의 반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요청을 받아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제6항), 이 경우 기본계획안의 확정 절차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에 관하여 당초 기본계획 확정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제7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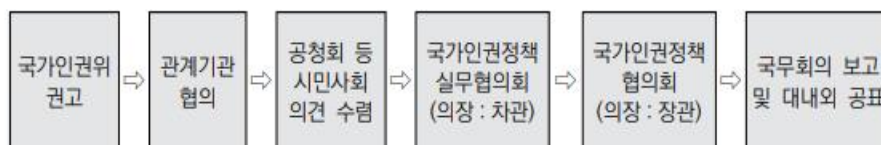
□ 안 제5조는 현재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¹³⁾에 따라 수립·시행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으로, 수립 시기 및 그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정안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심의’ 절차를 추가하는 등 그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인권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¹⁴⁾

□ 다만, 안 제5조제2항제3호는 인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차별금지 등의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명시하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의 경우 보호·배려의 대상으로서 일반적으로 그 의미가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¹⁵⁾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입법례들¹⁶⁾을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으나,

13)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제7조(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제4조 내지 제6조에 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국제 인권기준의 변화 또는 국내 상황에 따른 이행의 가능성 변동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협의회회의의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14)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년~2022년)」의 수립 절차



※ 출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년~2022년)

15)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전원재판부

“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면서,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특정한 사회적 약자와 관련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을 다양한 국가의 의무를 통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헌법이 제34조에서 여자(제3항), 노인·청소년(제4항), 신체장애자(제5항) 등 특정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개인 스스로가 자유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국가가 특히 이들에 대하여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2헌마1030 결정

“특히,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아동 등)이고…”

16) 「발명진흥법」 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①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

○ ‘사회적 소수자’의 경우 ① ‘소수자(少數者)’는 ‘적은 수의 사람’을 의미¹⁷⁾하므로 ‘사회적 소수자’는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가치와 다른 특성을 가지는 집단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그 개념이 상대적·가변적¹⁸⁾이고, 사회적으로 충분히 합의된 개념 정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차별금지 등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소수자’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우며, ② 현행 법률에서 “소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입법례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7조¹⁹⁾는 “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차이 등에 따른 소수자”로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소수자’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하여 그 의미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 제25조제1항 및 제2항²⁰⁾에 따라 인권 법령·제도·정책 등의 조사와

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4조(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이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17조(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능형 로봇 보급 촉진) 정부는 장애인·노령자·저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지능형 로봇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의 사용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한 개발 및 보급 촉진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8)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연구’, 20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차이 등에 따른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가 방송통신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음에도 안 제5조제6항과 같이 법무부장관에게 특정 사항을 직접 요청하는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변경요건을 ‘인권상황의 반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된 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되어야 하는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역계획의 수립 등 (안 제6조 및 제7조)

□ 안 제6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²¹⁾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라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소관 인권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함)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 안 제7조는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으로 하여금 기본계획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인권정책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함)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되, 시·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재량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제 정 안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법에서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인권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연도별시행계획과 전년도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도별시행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연도별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도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인권정책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6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인권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제1항), 해당 연도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면서(제2항), 법무부장관이 제출받은 연도별시행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연도별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제3항) 내용으로,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분야별·연차별 등으로 구분하여 실현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며, 해당 기관의 추진실적 보고와 법무부장관의 조정 요청을 통해 기본계획의 이행 및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법무부는 안 제6조에 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수립·시행되는 것인데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상 추진과제를 소관 업무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 2024년 기준 330여 개의 공공기관이 모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이 점검·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아보인다는 점, 양성평등기본계획 및 장애인종합계획 등 다른 유사한 기본계획의 경우에도 공공기관까지 계획 수립의 주체로 규정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본 조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안 제7조는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으로 하여금 기본계획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 하되(제1항), 시·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즉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지역계획을 재량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제2항)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력 및 행정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법무부는 안 제7조에 대하여 시·도를 제외한 지자체장이 수립·시행하는 지역인권정책계획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거나 조례로 정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보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연도별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및 인권정책 추진성과의 평가 (안 제8조 및 제9조)

- 안 제8조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연도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안 제9조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인권정책 추진성과를 종합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

제 정 안
제8조(연도별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① 법무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년도 연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기본계획이 종료되는 해는 제외한다)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할 때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에 따라 공개된 결과를 다음 연도의 연도별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도별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인권정책 추진성과의 평가)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해에 기본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권정책 추진성과(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연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포함한다)를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은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해에 지역계획에 따른 인권정책 추진성과를 종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정책 추진성과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8조는 법무부장관이 매년(기본계획이 종료되는 해는 제외)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전년도 연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도록 하고(제1항), 점검·평가 시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제2항),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검·평가 결과를 확정하여 공개하도록 하고(제3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연도별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제4항) 내용임.

□ 안 제9조는 법무부장관이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해에 기본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권정책 추진성과를 종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추진성과 평가 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고 있으며(제2항),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제3항), 평가

결과를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제4항).

또한,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은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해에 지역계획에 따른 인권정책 추진성과를 종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제5항).

- 안 제8조 및 제9조의 연도별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와 인권정책 추진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관련 계획의 실적 및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 공개 및 환류함으로써 계획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려는 것으로, 수립 주체의 인력 및 행정적 여력 등을 고려하여 수립 의무 및 평가 방식을 상이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임.

(4) 인권상황 백서 (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인권상황 백서를 발간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임.

제정안
제10조(인권상황 백서)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국내 인권상황, 인권정책 추진성과 및 평가 등이 포함된 백서(白書)를 발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인권백서에는 국내 인권상황, 인권정책 추진성과 및 평가 등이 포함되며, 5년을 주기로 인권상황 및 관련 정책의 추진 현황 등을 국민에게 알리고 투명하게 관리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법무부는 안 제10조에 대하여 이미 안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의 점검 결과와 인권정책 추진성과 평가 결과가 공개되므로, 이와 별도로 백서를 발간하여 공개할 의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5) 계획 수립 등을 위한 협조 (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연도별시행계획·지역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 점검·평가 및 추진성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제정안
제11조(계획 수립 등을 위한 협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연도별시행계획·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추진실적 점검·평가와 추진성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행정기관 간 협조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는 「행정절차법」 제7조²²⁾에 마련되어 있으나, 안 제11조는 행정기관 간 협조의무를 환기시키고, 대상 사무 및 그 주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에도 명시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행정기관 간 협조는 일반적으로 협조 요청 권한과 함께 요청을 받은 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함께 두고 있으므로, 협조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사 입법례²³⁾를 참조하여 협조의무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2) 「행정절차법」 제7조(행정청 간의 협조 등) ①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협업(다른 행정청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행정청 상호 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행정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행정협업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법교육지원법」 제10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법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4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다. 제3장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1)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인권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임.

제정안
제12조(국가인권정책위원회) ① 국가의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국가인권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가인권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인권정책의 추진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연도별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와 인권정책 추진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인권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5.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의 이행과 제16조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인권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인권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 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⑦ 국가인권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협의·조정하고 국가인권정책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정책위원회에 국가인권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인권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12조는 국가의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두고(제1항),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으로 ‘인권정책의 추진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와 인권정책 추진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인권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의 이행과 제16조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2항).

○ 국가인권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제3항),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인권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제4항), 국가인권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협의·조정하고 국가인권정책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정책위원회에 국가인권정책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제7항).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위원장에게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인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제5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제6항).

□ 현재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 경우 위원장이 법무부장관이고 각 중앙부처와 국무조정실 차관을 위원으로 하고 있는데, 안 제12조는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두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함으로써, 국가인권정책에 대한 원활한 의견 수렴 및 전문성 확보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법무부는 안 제12조에 대하여 인권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인권 법령·제도·정책 등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넘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권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인권위와 중앙행정기관 간의 관계를 고려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규정체계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의 ‘국가인권정책위원회’는 국가의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로서 그 업무 및 구성이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간 협의·조정을 담당하는 현행 ‘국가인권정책협의회’와 유사하므로²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²⁵⁾이 유사·중복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 설령 ‘국가인권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정부조직법」 제4조²⁶⁾가 자문위원회의

24)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제2조(기능)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있어 관계부처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중요한 국가인권정책으로 통일적인 정부대책수립을 위하여 관계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의 의장은 법무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및 국무조정실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② 의장은 사안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되는 안전과 관계된 소관 부처 소속 위원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비서실·국가인권위원회·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25)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6)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경우 대통령령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필요 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정안에서 제5조, 제9조 및 제12조 등 국가인권정책위원회와 관련된 조문들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의 설치(안 제13조)

- 안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침해 사안의 자체 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인권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제정안
제13조(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한 인권침해 사안의 자체적인 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인권기구(이하 “지방인권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방인권기구가 그 사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인권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방법·절차, 시정권고와 공표의 방식 등에 관한 지방인권기구의 자문에 응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인권기구의 사무범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안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한 인권침해 사안의 자체적인 조사, 인권침해사안에 대한 시정권고 및 공표, 지방인권정책의 수립, 인권교육 및 인권교육지원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는 ‘지방인권기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인권기구가 그 사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주기적으로 인권보호에 관한 학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며(제2항),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방법·절차, 시정권고와 공표의 방식 등에 관한 지방인권기구의 자문에 응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제3항), 지방인권기구의 사무 범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제4항) 하는 내용임.

□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 27)상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2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이하 생략)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급·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 삭제<2005.7.29.>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의 조사, 조정 내용과 처리 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지방인권기구의 조사·공표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공표 등과 그 대상·결과 등이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정 필요성 및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참고로, 법무부는 안 제13조에 대하여 인권침해의 조사·구제 업무는 통상 현장조사, 관계인 진술청취, 자료제출 요청 등을 포함하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사로서 조사 대상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권력적·침익적 행정작용인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는 점,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운영에 있어 인권위, 민간단체 등의 주기적인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안 제14조)

- 안 제14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인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제49조의2(처리 결과 등의 공개) 위원회는 이 장에 따른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 결과, 관계기관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정안

제14조(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담당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권정책책임관 지정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모두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권정책책임관 지정의무와 관련하여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권자치역량, 인력 및 조직 등 행정적 여력, 유사입법²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인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서 장애인 인권이나 양성평등 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므로,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정책책임관,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과 인권정책책임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28) 「장애인복지법」 제12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3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양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전담전문인력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로, 법무부는 안 제14조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인권정책책임관 지정을 의무화하는 경우 과도한 부담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인권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안 제15조)

- 안 제15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제정안
제15조(인권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등을 할 수 있고²⁹⁾, 업무수행을 위하여

2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 단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³⁰⁾.

- 안 제15조는 위 조항들과 함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 협의를 통한 효율적인 인권정책 수립·시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관계기관등과의 협의) ①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라. 제4장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
(안 제16조 및 제17조)

□ 안 제16조는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의 이행에 관하여 국제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하는 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표명한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국가보고서에 대한 국제인권조약기구 등의 심의 절차가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 안 제17조는 국제인권기구 등의 인권에 관한 권고의 이행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임.

제정안
제16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의 이행에 관하여 국제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하는 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보고서에 관하여 표명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주관하는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소관 인권정책 분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국가보고서에 관한 국제인권조약기구 등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해당 심의 절차가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보고서의 작성과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인권기구 등의 인권에 관한 권고를 이행하고, 이를 인권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인권기구 등의 인권에 관한 권고 이행, 권고 내용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은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8개이며, 그 주요 내용 및 주관부처는 다음 표와 같음. 우리나라는 가입·비준국으로서 이행에 관하여 조약별로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지니며, UN의 모든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4년 6개월 주기로 국가 상호간 점검하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도 실시되고 있음.

<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개요 >

- 1)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자유권규약)**
- 생명권, 차별금지, 표현의자유 등 내용, 법무부 주관
- 2) **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사회권 규약)**
- 교육권, 근로3권, 건강권, 사회보장권 등 내용, 법무부 주관
- 3) **UN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차별의 방지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협약)**
- 고문의 범죄화, 고문행위자 처벌, 피해자 구제 등 내용, 법무부 주관
- 4)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권리협약)**
- 아동인권 전반에 관한 내용, 보건복지부 주관
- 5) **UN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 여성인권 전반에 관한 내용, 성평등가족부 주관
- 6) **UN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 외국인, 이주민, 난민 등 인권에 관한 내용, 외교부 주관

7)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권리협약)**

- 장애인 복지와 차별금지 등에 관한 내용, 보건복지부 주관

8) **UN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강제실종방지협약)**

- 강제실종범죄 방지·처벌과 피해자 권리 보장 등에 관한 내용, 법무부 주관

※자료: 법무부

□ 이에, 제정안은 여러 인권조약별 국가보고서 작성 및 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인권기구 등의 인권에 관한 권고를 이행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선언적 노력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및 비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인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 구체적으로, 안 제16조는 국제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 작성 시 해당 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제1항), 국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주관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소관 인권정책 분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제2항),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보고서에 관한 국제인권조약기구 등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해당 심의 절차가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3항).

○ 안 제1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인권기구 등의 인권에 관한 권고를 이행하고 이를 인권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등을 규정하는 내용임.

□ 다만, 국제인권조약기구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사례들을 살펴보면, 후속 조치 기한이 모두 6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개별 심의 사안에 따라 제출기한이 상이하게 설정되므로, 제정안에서 설정하고 있는 6개월 이내라는 후속 조치 기한이 실무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제인권조약기구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사례 >

조약기구	후속조치 정보 요청 사유	제출기한	실제사례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2-4개) 중 추가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경우	1년	4차 최종견해('15. 11.) <u>1년 내</u> 정보 요청
사회권위원회	긴급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최종견해(최대 3개)에 대해서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24개월	4차 최종견해('17. 10.) 채택 후 <u>18개월</u> 이내 정보 요청
고문방지위원회	중대하고(serious), 보호적(protective)이거나 1년 내에 조치가 가능한(feasible) 최종견해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1년	3-5차 최종견해('17. 5.) '18. 5. 12.까지 일부 정보 요청 나머지 정보는 <u>다음 보고기간 내</u> 에 통지 요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중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1년	17-19차 최종견해('19. 1.) <u>채택 1년 내</u> 정보 요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나 최종견해를 이행하기 위한 당사국의 조치에 대한 추가보고서가 필요한 경우	1~2년	7차 최종견해('11. 8.) <u>2년 내</u> 요청 8차 최종견해('18. 3) 시 별도 요청 없이 '20. 3. 후속보고 제출

※자료: 법무부

□ 참고로, 법무부는 안 제16조제1항에 대하여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³¹⁾에 따라 국가보고서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 청취가 의무화되어 있고, 인권위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별도의 보고서를 조약기구 등에 제출하여 심의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국가보고서 작성 시 인권위 의견을 존중할 의무까지 두는 것은 적절하지

31) 제21조(정부보고서 작성 시 위원회 의견 청취)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정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아울러 안 제16조제3항에 대하여는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및 권고에 대한 조치는 국내법상 정합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기한을 규정하는 것은 부적정한 측면이 있다는 점,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관련 법률³²⁾에 따라 심의 종료 이후에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을 거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서도 이와 관련된 별도 규정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32)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6.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법」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4.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마. 제5장 기업과 인권 (안 제18조 및 제19조)

- 안 제18조 및 제19조는 각각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관한 사항과 기업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18조(기업의 인권존중책임) ① 기업은 국내·국외에서의 기업활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② 기업은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 피해자가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고, 적절한 구제 수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기업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과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업이 제17조에 따른 인권존중책임(이하 “인권존중책임”이라 한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침·표준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1.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실천을 위한 세부 지침 2.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실천 관련 정보의 자율적 공개를 위한 표준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실천에 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지침·표준 마련, 제3항에 따른 우수 사례 발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안 제18조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기업은 국내·국외에서의 기업활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3자의 인권침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되고(제1항), 인권침해 발생을 대비하여 피해구제 절차를 사전적으로 마련하고 적절한 구제수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항)는 기업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령과 정책을 마련하고(제1항), 기업이 인권존중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및 표준을 마련하여 보급하며 이를 활용하도록 장려하며(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실천에 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제3항),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실천 관련 지침·표준 마련 및 우수 사례 발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4항).

□ 안 제18조 및 제19조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규범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최근 논의를 반영하여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³³⁾의 핵심적인 내용인 기업과 국가의 책임을 조문화한 선언적 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33)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은 2011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다국적기업과 기타 기업의 인권에 관한 책임의 기준을 식별하고 이를 명확히 하며 그와 관련한 국가의 역할을 정교화하기 위하여 만든 지침으로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구제에 대한 접근책 3가지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음.

의 장려 및 지원을 통해 기업의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하려는 취지로 보임.

- 참고로, 법무부는 안 제18조제2항에 대하여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구제를 당해 기업이 마련한 절차에서 심사하게 하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모든 기업에 사전적으로 피해자 구제 요구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자칫 기업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아울러, 안 제19조에 대하여는 기업이 인권존중책임 실천 관련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경우 ESG 공시 의무화 움직임³⁴⁾에 비추어 기업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부과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 우수사례 선정시 가족친화인증기업, 녹색인증, 여성기업인증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율적 정보공개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34) 금융위원회는 2024. 4. 제4차 ESG 금융추진단 회의에서 국내 ESG 공시 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으며, 구체적인 도입시기는 2026년 이후로 예상됨(2023. 10. 제3차 ESG 금융추진단 회의) *ESG: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임.

바. 제6장 인권교육 (안 제20조 및 제21조)

□ 안 제20조는 인권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인권교육의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평생교육기관에 인권교육을 권장하도록 하며(제2항),

○ 안 제21조는 인권교육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평생교육기관, 그 밖의 인권교육 관련 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인권교육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의무기관의 장이 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제2항) 내용임.

제 정 안

제20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및 시설(이하 “인권교육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인권침해나 부당한 처우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5.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6.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구금·보호시설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8.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9. 그 밖에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단체 및 시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인권교육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인권교육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인권교육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4.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5. 그 밖의 인권교육 관련 단체
-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의무기관의 장이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안 제20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³⁵⁾,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³⁶⁾,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³⁷⁾, 「국가인권위원회법」에

35)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36)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7)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다른 구금·보호시설³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³⁹⁾, 그 밖에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단체 및 시설’을 “인권교육의무기관”으로 하고, 해당 기관, 단체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⁴⁰⁾에 인권교육의

-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3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구금·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하고 유치(留置)하거나 수용하는 데에 사용하는 시설
- 다. 군 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
- 라. 외국인 보호소
- 마. 다수인 보호시설(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9)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40)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필요성을 홍보하고 인권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도록 하는(제2항) 내용임.

- 인권교육의무기관 중 “국가기관”은 제정안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뿐 아니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보이며, 유사 입법례로는 「아동복지법」 제26조의²⁴¹⁾가 있음.
- 안 제21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평생교육기관, 그 밖의 인권교육 관련 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인권교육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연구·개발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안 제21조제2항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의무기관의 장이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임.
- 참고로, 법무부는 안 제20조에 대하여 이미 성차별, 장애인식 개선 등 개별법에 따라 다수의 인권 관련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복적 의무교육의 통·폐합 등을 통해 교육효과를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41)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모든 국가기관·지자체 및 초·중·고등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 공공기관, 공직자 유관단체 전체를 인권교육 의무대상으로 설정할 경우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해야 할 기관이 전국적으로 수만 개 이상에 달하는 등 현실적 문제가 우려되는 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인권교육 의무 기관으로 규정할 경우 해당 법률만으로는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기관의 대강을 파악하기 곤란하고 그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행정부 자의에 의한 남용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사. 제7장 보칙

(1) 국제협력(안 제22조)

- 안 제2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정책의 개발·추진을 위해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관계 외국단체·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음을 규정함.

제정안
제22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정책의 개발·추진을 위하여 외국정부·국제기구나 관계 외국단체·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0조⁴²⁾ 등과 유사하게 외국정부·국제기구나 관계 외국단체·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인권정책 개발·추진 과정에서 국제협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2) 「양성평등기본법」 제40조(국제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하는 경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특히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간의 교류와 연대(連帶)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이를 사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안 제23조)

- 안 제2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 일부의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제정안
제23조(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이는 비영리법인·단체가 인권보호·증진 활동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규정할 때에는 대상사업 또는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조금의 지급 안정성, 예측가능성 및 통제가능성⁴³⁾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법무부는 안 제23조에 대하여 국가의 재정지원 등을 다루면서도 비영리법인 단체의 범위나 지원 또는 경비의 범위·성격 등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거나 타법을 준용하지도 않는 점, 이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공익활동을 수행

4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교부 결정의 취소(제30조), 보조금의 환수(제33조), 벌칙(제40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하는 단체(법인 포함)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이 실시 중이므로
업무적으로 중첩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
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인권의 날 신설(안 제24조)

- 안 제24조는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제정안
제24조(인권의 날) ①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고, 인권 보호·존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인권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안 제23조에서 인권의 날로 지정한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⁴⁴⁾이 채택된 날로, 인권의 날을 신설하고 해당 기념일에 관련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4)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제3회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에 관한 세계 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중심이지만 노동자의 단결권, 교육에 관한 권리, 예술을 향유할 권리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하여서도 규정하고 있음.

아. 부 칙

- 안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제2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부보고서”라는 표현을 “국가보고서”로 변경하는 내용임.

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정부보고서”를 “국가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정부보고서”를 “국가보고서”로 한다.

- 안 부칙 제1조는 국민에게 법률을 주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하위법령의 입법과 집행기관의 사전 준비를 위한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보임.
- 안 부칙 제2조는 법체계적 측면에서 법률 용어를 통일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에서의 “정부보고서”를 “국가보고서”로 변경하는 것임.

문 의 처

02)6788-5073